

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

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**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**
 (이하 회사라 칭한다)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, 4층 (청담동, 신영빌딩) /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

근저당권 설정인 **성명 :** _____ **주소 :** _____
 (이하 소유자라 칭한다)

채무자 **성명 :** _____ **주소 :** _____
 (이하 채무자라 칭한다)

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본 계약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

-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암은 기채(이하 저당물건)에 순위 제 _____ 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- 1.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(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)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)
-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.
- ③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.

제2조 담보보존의무

-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,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·해제·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(중장비)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.
- ③ 저당물건의 멸실, 훼손, 공용징수,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본 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·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·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3조 담보가치유지

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,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·관리

-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 실행 시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·시기·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.
- ② 전 항에 의한 근저당물건의 처분방법, 시기, 가격,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
[저당물건의 등록]

저당물건명	형식	차대번호	원동기형식	자동차등록번호	사용의 본거지

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**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** _____년 _____월 _____일
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, 4층 (청담동, 신영빌딩) /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
 사업자등록번호 : 104-86-29244 법인등록번호 : 110111-4385 856



근저당권 설정인 주소 : _____
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 _____ **성명 :** _____ 서명 또는 (인)

채무자 주소 : _____
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 _____ **성명 :** _____ 서명 또는 (인)